

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송달(등기우편)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



- 공고명: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
- 법적근거: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
- 공고기간: 2024. 2. 22. ~ 2024. 3. 7.(14일간)
- 공고장소: 전국 시·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공고대상

| 위 치 | 점유면적 | 무단점유자 | 무단점유 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382 [(구)예천남부초인포분교] | 3,787.6㎡ (토지 3,000, 건물 787.6) | (주)한국창○경○컨○ 대표 윤*상 | 불법 건축물, 구조물 및 물품 (가구, 집기, 사무용품 등) |

6. 공고내용

-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2024. 3. 7.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행정대집행은 우리청 스스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-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(☎ 054-650-25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